

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31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“거창승강기산업밸리”보다 더 포괄적 의미인 “거창승강기밸리”로 용어를 변경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강화하고,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과 지원취소 및 환수 기간을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맞추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포괄적 의미로 용어 변경(안 제명, 제1조, 제2조제1호)

○ 거창승강기산업밸리 ⇒ 거창승강기밸리

나. 승강기산업체에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변경(안 제15조제4항)

○ (현행) 7년 ⇒ (변경) 5년

다.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기간 변경(안 제16조제2항제6호·제7호)

○ (현행) 7년 ⇒ (변경) 5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○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11조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17조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3. 10.~3. 30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”를 “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“거창승강기산업밸리”를 “거창승강기밸리”로 한다.

제2조제13호다목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”를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)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를 준용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「거창군세 감면조례」”를 “「거창군 군세 감면조례」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또는 가등기”를 “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상 영위”를 “사업을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영위”로 “타업종”을 “다른 업종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제6호 중 “토지를 7년”을 “토지를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7년”을 “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를,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를 “「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</u>	<u>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창승강기산업밸리</u> 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거창승강기밸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 <u>거창승강기산업밸리</u> ”(이하 “ <u>밸리</u> ”라 한다)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. 2.~12.(생 략) 13. (생 략) 가.~나.(생략 다. 「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」 제62조에 따른 보험료(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4.~15.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“ <u>거창승강기밸리</u> ”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~12.(현행과 같음) 13. (현행과 같음) 가.~나.(현행과 같음) 다. 「 <u>국민건강보험법</u> 」 제69조----- ----- ----- 14.~15.(현행과 같음)
제8조(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)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하여 <u>밸리</u> 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「 <u>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</u> 」 제2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	제8조(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)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 <u>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</u> 」 제11조를 준용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세제상의 지원) 군수는 벨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나 「 <u>거창군세 감면조례</u> 」, 그 밖의 관계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.	제13조(세제상의 지원) ----- ----- -----「 <u>거창군 군세 감면조례</u> 」----- ----- -----
제15조(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) ①~② (생 략)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투자계 획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저당권 설정 <u>또는 가등기</u> 등을 할 수 있다.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<u>사업을 사업</u> <u>개시일부터 7년 이상 영위</u> 하여야 하며, <u>타업종</u> 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15조(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, <u>가등기 또는</u> <u>보증보험증권</u> ----- ④----- ----- <u>사업을 군수가 정산</u> <u>완료</u> 를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영위--- <u>다른 업종</u> ----- -----
제16조(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) ① (생 략)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 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 「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. 1.~5. (생 략) 6.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 아 매입 또는 임대한 <u>토지를 7년</u> 이 내에 처분한 경우 7.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<u>7년</u>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8. (생 략) ③ (생 략)	제16조(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토지를 군수가 정산완료를</u> <u>통보한 날부터 5년</u> ----- ----- 7. ----- ----- <u>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</u> <u>부터 5년</u> ----- 8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다른 조례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투자유치 촉진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를,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하여는 「<u>거창군 기업 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</u>」를,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<u>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및 「<u>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</u>」를 각각 준용한다.	제17조(다른 조례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「거창군 기업 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」----- -----